

의안번호	2204569
의 퇴 인	고동진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8.
추계번호	24C4269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생활 정착 교육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(안 제6조의2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6조의2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2(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생활 정착 교육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될 기관의 규모, 형태, 수행사업 등을 예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한국어교육의 경우 현행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¹⁾에 따라 전국에 설치·

1)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함)를 설치·운영한다.

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총 231개소)에서 ‘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’을 통해 실시 중에 있음²⁾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

2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

3.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
4.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
5.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

6.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·번역 지원사업

7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

8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·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⑦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, 위탁·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2) 지원예산: 2024년 기준 22억 1,100만원 편성

주요내용: “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” 등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